



금융감독원

보도자료



금융은 통통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2025.12.15.(월) 15:00	배포	2025.12.15.(월)	
담당부서	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소비자보호제도팀	책임자	국장	김옥배 (02-3145-5700)
		담당자	팀장	김현정 (02-3145-5685)
	은행검사1국 검사기획팀	책임자	국장	김남태 (02-3145-7050)
		담당자	팀장	안병남 (02-3145-7060)

금융감독원, 대출성상품 판매대리·중개법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

I 개요

- 금융감독원은 '25.12.15.(월)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·중개법인 (이하 '대출중개법인')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
- 동 워크숍에는 6개 금융업협회 관계자 및 대출중개법인의 금융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또는 내부통제 담당자 등 190여명이 참석
- 워크숍을 통해 법규준수 관련 최근 주요 이슈사항과 검사결과 미흡 사례 등을 공유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

대출성상품 판매대리·중개법인 워크숍 개요

√ (일시) '25.12.15.(월) 15:00 ~ 16:15

√ (장소)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

√ (참석자) 6개 금융업협회, 130여개 판매대리·중개법인 임직원 등 약 190명

시간	주요 내용
15:00 ~ 15:05 (5분)	[개회 및 모두발언]
15:05 ~ 15:30 (25분)	① 건전한 영업을 위한 준수사항 안내 - 금소법상 영업행위 규제, 신정법·개인정보법 주요내용 등
15:30 ~ 16:00 (30분)	② 대출성 판매대리·중개법인 대상 최근 검사결과 미흡 사례
16:00 ~ 16:15 (15분)	③ 검사·제재 절차 안내 및 관련 주요 당부사항 등

II 주요 논의내용

가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발언 요지

- 금융감독원 박지선 부원장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
 - 대출중개업은 '21년 금소법 시행 이후 지속 성장중인 만큼, 그 역할과 책임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을 언급하며
 - 금융소비자보호, 대출시장의 건전성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^①소비자와의 이해상충방지 체계 구축, ^②건전한 영업질서 확립, ^③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

나 건전한营업을 위한 준수사항* 안내

* 금소법상 설명의무, 부당권유행위 및 허위·과장 광고 금지 등 대출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및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규 등을 설명

- ① **(광고)** 준법감시인 사전심의 등의 방법·절차 등을 준수하고, 법규상 필수 포함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,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은 금지됨을 안내

※ 금융소비자보호법규상 광고 관련 주요 유의 사례

- ▶ **(광고①)** 대출금리 등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'필요시 상담제공' 등의 메시지와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광고도 준법감시인 사전심의 절차를 거칠 필요
- ▶ **(광고②)** 직접판매업자의 명칭,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등 필수 포함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안내할 필요
- ▶ **(광고③)** '최저 금리 보장' 등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문구 사용, 이자율을 일 단위로 표시하거나, 대출이자를 약정 내용보다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됨

- ② **(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지의무)** 온라인(블로그, 채팅 등) 대출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, 소속, 성명 등이 기재된 **증표** 등을 제시하여 등록업자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요청
- ③ **(개인신용정보 수집·처리)** 소비자와의 최접점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·처리하므로,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사전동의를 받아 적법·정당하게 수집·처리해야 함을 강조

4 (온라인 상품비교·추천) 온라인상 상품 비교·추천시, 수수료 등 중개법인의 이익을 위해 상품 배열 기준을 왜곡하거나,

- 소비자가 검색한 결과와 무관한 상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

다 검사 관련 주요 당부사항 등

□ 대출중개법인에 대한 검사 실시 결과 확인된 내부통제 소홀 등 주요 미흡사항을 공유하고,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내부통제 체계 강화 등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을 당부

※ 검사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 사례

- ▶ (내부통제 운영) 대출상담사의 법령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·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기준 및 절차 관련 내규가 미비하고 실제 점검도 미 실시
- ▶ (광고물 관리①) 은행으로부터 승인받은 광고물의 관리대장에서 구체적인 사용 및 폐기일을 기록하지 않음
- ▶ (광고물 관리②) 온라인 미승인 광고물 게시 여부 점검시 포털사이트에서 법인명 등을 단순 검색하는 수준에 그치며, 아파트 입주자 카페 모니터링 등 점검의 실효성 제고 필요
- ▶ (대출상담사 교육) 대출상담사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지만, 이에 대한 기록 및 증빙이 없어 실제 교육 실시 여부 확인 불가

□ 또한, 다수 대출중개법인들이 검사·제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점*을 감안하여, 검사·제재 절차 및 임직원 권익보호 제도 등을 안내

* 대출중개법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(‘21.3.) 이후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에 편입

III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

□ 금일 워크숍을 통해 금융업 전반에 걸쳐 강조되고 있는 금융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 및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노력이 대출중개업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

- 금융감독원은 대출중개업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하는 내부통제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